

#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0월 20일  
행정재경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0월 7일, 금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22년 10월 7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2년 10월 20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송오섭 행정안전국장)

### 가. 개정이유

- 표창 대상을 확대하여 금천구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적극 발굴하여 격려하고, 표창사실 확인 조항을 신설하여 분실 등의 사유로 표창의 재교부 요청 시 표창사실 확인서를 교부하여 표창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 및 단체”로 한정하고 있는 표창 대상의 범위를 확대(안 제2조)
- 표창사실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16조 신설)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박병규

나.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 및 단체 (기업체 포함)로 한정하고 있는 표창 대상의 범위를 거주나 소재지 여부에 관계없이 확대하여 금천구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적극 발굴하여 격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표창대상에 해당구의 거주 및 소재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곳은 우리구, 강동구가 있으며, 강동구는 예외조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민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표창할 수 있다”를 두고 있음.
- 단, 표창의 수여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공적 검증 및 심사를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표창제도 운영이 선행되어야 표창의 실질적인 공신력 확보와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